

202.89호

행정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 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법률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와, 행정명령 202.22호부터 202.26호, 202.32호, 202.33호, 202.34호, 202.35호, 202.44호, 202.45호, 202.53호, 202.57호, 202.64호, 202.69호, 202.73호, 202.74호 및 202.75호까지에 포함된 후속 지침으로 대체되지 않은 모든 지침을 행정명령 202.80호 및 202.81호에서 지속되고 포함된 바와 같이 2021년 2월 6일 토요일까지 30일간 더 지속하며, 아래에서 수정된 바를 제외하며 이로써 다음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1년 2월 6일 토요일까지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수정합니다.

- 2020년에 이뤄진 선거 수행과 관련하여 전술한 행정명령 202.23호, 202.24호, 202.26호에 포함된 법률 또는 지침의 중지는 더 이상 중지되지 않으며, 해당 중지 또는 수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 또는 2021년에 이뤄지는 특별 선거를 위한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실업 보험 징수에 관련된 노동법(labor law) 제522항의 중지가 계속되고, 또한 부재자 투표와 관련된 교육법(Education law)을 수정하는 행정명령 202.81호에 포함된 중지가 지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0장 제405.3항의 하위조항 (f), 해당 하위조항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전용 시설시설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이로써 해당 시설이 시설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며, 시설 관리자가 일반 병원의 확립된 운영자이며 보건부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모든 빌리지 선거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법(Election Law) 제6항 및 15항, 정당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당 지명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당 정당의 장이 설정한 바에 따라 원격으로 수행될 수 있다.
- 선거법의 제15-120항과 제15-122항 및 타운법(Town Law) 제84-a항 및 특별 지역구 선거와 관련되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가 집행하지 않은 법률의 모든 조항,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부재자 투표 요청 또는 수령의 목적으로 질병으로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선거법의 제6-202(3)항 및 제15-108(2)(c)항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지하는 마지막 날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통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전당대회 전자 참여 수단은 전당대회 통지와 같은 방식으로 보충 통지에서 알려야 하며 해당 전당대회 전 5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 선거법 § 8-407, 선거 조사관이 물리적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에 참석하거나 방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편 또는 개인 배달을 통해 보내도록 허용하기 위함.
-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제2168항 및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 10장의 제66-1.2항에 대한 행정명령 202.82호 및 202.88호의 수정은 모든 개인(어린이 또는 성인)에 대한 모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백신 투여 24시간 이내에 뉴욕주 면역 정보 시스템(New York State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 NYSIIS) 또는 시 면역 등록부(Citywide Immunization Registry, CIR)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바에 한하여 계속되고 수정됩니다.

또한,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925-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주 재난 비상사태 시 영향을 받은 카운티, 도시, 타운, 빌리지, 교육구 최고경영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 또는 벌금 없이 재산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로써 본인은 연장을 신청한 지불 기일이 된 다음 지방단체의 재산세 납부기한을 이자 또는 벌금 없이 21일간 연장합니다. 베이빌 빌리지와 트로이 시.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1년 2월 6일 토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배정받고 수령한 의료 시설, 제공업체 또는 단체 또는 코로나19 백신을 재분배받은 이들이 해당 시설에서 수령한 지 1주일 이내에 모든 백신을 투여해야 함을 요구했던 행정명령 202.88호에 포함된 지침은 2021년 1월 4일 현재 의료 시설, 제공업체 또는 단체에서 현재 보유한 백신에 적용하기 위해서만 수정되었으며, 이러한 잔여 투여량은 2021년 1월 8일 이내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단, 시설에서 정당한 이유로 그러한 기한을 연장하도록 커미셔너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2월 6일 이전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1년 1월 7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뉴욕시 선거의 경우 서명 수는 315건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전에 치뤄지는 타운 또는 빌리지 선거에 대하여, 주 전체 선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모든 사무실의 일반 선거에 대한 독립 지명 청원서 서명 요구 사항은 다음 중 더 적은 것이 될 것입니다. (i) 공백 및 무효 표를 제외하고, 그러한 단위에서 마지막 주지사 선거에서 주지사에게 대한 총 투표 수의 3.3퍼센트, 또는 (ii) 선거법의 제6-142항의 하위조항 2에 의해 제공된 법정 최소 수의 70퍼센트와 동일한 수, 또는 마을 선거에 대해, 선거법의 제15-108항의 하위조항 6 또는 제6-206항의 하위조항 4에서 제공된 법정 최소 수의 70퍼센트.

2021년 1월 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